

(2020. 4월 기준)

# 민원사무편람

(신속 · 친절 · 공정)

이 편람은 한국은행 민원사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민원사무처리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람은 민원인이 항상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 차 례

I. 민원사무 개요

II.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III. 일상민원 사무처리 명세표

<참고>

1. 민원사무처리 흐름도
2. 한국은행 이용안내
3. 한국은행 서비스현장

## I. 민원사무 개요

## 1. 민원인의 정의

「민원인」이라 함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 가. 한국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한국은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다. 한국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2. 민원사무의 정의

민원인이 한국은행에 대하여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 가. 허가·인가·승인·지정·인정·추천 등의 신청
- 나.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라. 법령·제도·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마. 제도, 시책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바. 한국은행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 사. 그 밖에 한국은행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3. 접수

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단, 구술,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절차 제15조]

나.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타부서 사항 민원을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 4. 처리기간의 계산

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 5. 처리 및 통보

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51조]

나.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 6. 기 타

가. 분임관리책임자(각 부서·국소속실장)는 월 1회 이상 담당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 및 통제하고 법규위반 등의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리책임자(기획협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나.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부서의 관계 규정 등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분임관리책임자는 민원사무편람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신설이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설 또는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53조, 동 규정 시행절차 제19조]

## Ⅱ.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 1. 각 부서 공통사항

일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처 리 근 거	처리기간
1	단순한 질의, 설명이나 조언의 요구 *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요구하는 경우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즉시
2	단순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
3	한국은행의 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법령에 대한 질의)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7일 (14일)
4	고충민원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7일
5	한국은행의 제도, 시책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14일



## 2. 국고증권실

일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처 리 기 간	페이지
1-가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 및 국고금수납점 지정 신고	5일	13
나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	3일 또는 7일	17
2-가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	3일	19
나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	3일	24
다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	1일	26
3-가	국채등록부 잔액 증명	즉시	28
나	통화안정증권등록부 현재액 증명	즉시	30

### 3. 국 제 국

일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처 리 기 간	페이지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20일	32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5일	33
3	비독립채산제 적용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적 영업기금 지급 신고수리	5일	35
4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5일	36
5	상계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	2일	37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2일	39
7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2일	41
8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2일	43
9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5일	45
10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3일	46
11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5일	48
1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5일	51
13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3일	53

일련 번호	민 원 사 무 명	처 리 기 간	페이지
14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채권의 매매 신고	3일	55
15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5일	57
16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3일	59
17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5일	61
18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신고	3일	63
19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	3일	65
20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3일	68
21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3일	69
기타	외환관련 공통서식( I, II, III), 별도 지정서식(양식 1) 및 서약서		71

### Ⅲ. 일상민원 사무처리 명세표

가. 국고증권실

1-가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 및 국고금수납점 지정 신고					
구 비 서 류	1.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서 2.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 3.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국고팀				
	경 유	-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국고팀				
	처리기간	5일				
	근거법규	「국고금취급규정」 제5조, 제6조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 - 신고수리				
심 사 기 준	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 설치는 사전 신고제					

처리기한
5일

**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

(☎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 . .  
 참 조 :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장 신고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영업점을 국고금수납대리점으로 신고합니다.

- 1. 점 포 명 :
- 2. 주 소 :
- 3. 개점예정일 : 20 . . . . .
- 4. 업무개시예정일 :
- 5. 결제모점 :

※ 굵은선 내는 전산입력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할 것  
 ※ 제출기한 : 국고수납대리점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A4)

##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 . .

참 조 :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장

기관장 (인)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 등의 회원조합 등 중 아래의 조합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신고합니다.

국고금수납점명 (점포코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개시 예 정 일	결제모점명 (점포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기한 : 국고금수납점의 업무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규격:A4)

처리기한
5일

##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

(☎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기관장 (인)

「국고금 취급절차」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금수납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 1. 신청 금융기관

가. 기관명 : (지로코드: )

나. 소재지 :

다. 자본 및 종업원수 : 총자산 - 억원 자기자본 - 억원 상시종업원 : 명

라. 설립일 :

마. 주요업무 :

바. 지역별 영업점 현황 :

사. 기타 참고사항(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 관한 사항 등)

### 2.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가. 기관명 :

나. 소재지 :

### 3. 계약체결 희망일 :

(규격:A4)



1-나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					
구 비 서 류	1.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국고팀				
	경 유	—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국고팀				
	처리기간	3일 또는 7일				
	근거법규	「국고금취급규정」 제5조, 제6조 「국고금취급절차」 제4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 - 신고수리				
심 사 기 준	국고대리점 폐지·변경은 사전 신고제					

##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

(☎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은행 총재

20 . .

참 조 : 국고증권실장

기관장 (인)

「국고금 취급절차」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대리점의 (폐지, 명칭·주소·결제모점·통할점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국고대리점 구분	변경 대상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예정일자
	명칭	(코드: )	(코드: )	
	주소	□□□-□□□	□□□-□□□	
	결제모점	(코드: )	(코드: )	
	통할점	(코드: )	(코드: )	
	명칭	(코드: )	(코드: )	
	주소	□□□-□□□	□□□-□□□	
	결제모점	(코드: )	(코드: )	
	통할점	(코드: )	(코드: )	

주) 폐지의 경우 변경후 란에 “폐지”라 기재

※ 제출기한 : 폐지 또는 명칭·주소 변경의 경우 변경 예정일의 3일 전, 결제모점 또는 통할점 변경의 경우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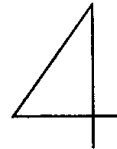
(규격:A4)

2-가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					
구 비 서 류	1. 수입인지 판매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2. 수입인지 판매계약서(2부) 3.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5.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금융기관 작성」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경 유	금융기관(은행)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 일				
	근거법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0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 - 심사 - 결재 - 승인					
심 사 기 준	1. 최근 1년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참조)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신청인이 판매소 설치장소에서 하는 일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판매소 설치장소			
수입인지를 공급받으려는 금융기관	점포명		
	소재지		

<판매소 약도>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 장소에서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입인지 판매인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입인지 판매인 및 판매소 등)** 수입인지 판매인, 판매소 설치장소 및 할인판매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판매계약번호			
판 매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판매소 설치장소			
할인판매금융기관		점포명	
		소재지	

**제2조(수입인지의 공급)** ① “을”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서 정한 할인판매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는다.  
 ② “을”은 금융기관이 수입인지를 할인판매할 때 대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 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인지 판매인의 준수사항)** “을”은 수입인지 판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수입인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입인지를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이 계약에서 정한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제4조(교환 및 환매)** ① “을”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입인지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을” 또는 “을”의 상속인이 잔여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하도록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제3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수입인지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계약 미이행 사실 또는 판매의사 유무를 “을”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을”이 수입인지 판매업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거쳐 “갑”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을”은 제3조 제3호 또는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거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을”로부터 계약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 이전의 경우 “갑”은 이전장소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상의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주 소  
 한국은행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또는 상호 및 대표자)

(규격 : A4)

##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 1. 신청내용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판매소 설치장소				
할인판매금융기관				

### 2. 확인사항

항목	확인결과
1. 최근 1년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radio"/> 없음 ( ) <input type="radio"/> 있음 ( )
2.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input type="radio"/> 적정 ( ) <input type="radio"/> 부적정 ( )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input type="radio"/> 적정 ( ) <input type="radio"/> 부적정 ( )
4.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환경	<input type="radio"/> 주택가 ( ) <input type="radio"/> 상가 ( ) <input type="radio"/> 도로변 ( ) <input type="radio"/> 기타 ( )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증빙별첨)	<input type="radio"/> 소유 ( ) <input type="radio"/> 임차 ( ) <input type="radio"/> 기타 ( )

\_\_\_\_\_ 은행 지점장 (인)

2-나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					
구 비 서 류	1.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서 2. 임대차계약서(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3.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금융기관 작성]* * 수입인지 판매장소 변경의 경우에만 제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경 유	금융기관(은행)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 일				
	근거법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2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 - 심사 - 결재 - 통보				
심 사 기 준	1. 기재사항의 완비 여부  다만, 판매계약 변경사유가 수입인지판매장소 변경일 경우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시의 심사기준을 준용한 적정여부					



##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서

한국은행 \_\_\_\_\_ 앞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합니다.

### 1. 판매인 인적사항

판매계약번호				
판매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소 설치장소				
할인판매금융기관				

### 2.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주 : 1) 변경사항은 판매인 주소, 판매소 설치장소, 할인판매 금융기관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인 성명을 개명한 경우 내용을 기재  
 2) 판매소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예정일자를 함께 기재하고 판매소의 약도를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수입인지 판매인 : \_\_\_\_\_ (인)  
 할인판매금융기관 :            은행            지점장 (인)

(규격 : A4)

2-다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					
구 비 서 류	1.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경 유	금융기관(은행)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1 일				
	근거법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1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 - 심사 - 결재 - 통보				
심 사 기 준	1. 기재사항의 완비 여부					

##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서

한국은행 \_\_\_\_\_ 앞

수입인지 판매업무를 자진 폐지하고자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1. 판매인 인적사항

판매계약번호				
판매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소 설치장소				
할인판매금융기관				

### 2. 계약해지 예정일 :

년 월 일

수입인지 판매인 : \_\_\_\_\_ (인)

할인판매금융기관 : \_\_\_\_\_ 은행 \_\_\_\_\_ 지점장 (인)

3-가	국채등록부 잔액 증명						
구 비 서 류	1. 국채등록 관련 서류 발급 청구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					
	경 유	-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					
	처리기간	즉시					
	근거법규	「국채사무취급절차」 제25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 - 심사 - 결재 - 통보					
심 사 기 준	1. 증명청구인 인감의 확인 2. 증명청구액과 등록부와의 일치 여부						

## 국채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

(    년    월    일 )

한국은행 \_\_\_\_\_ 귀중

아래와 같이 국채등록관련 서류발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법 인 명 :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성 명(대표자) : (인)

### 1. 신청서류

<input type="checkbox"/> 국채등록필통지서 <input type="checkbox"/> 국채일괄등록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국채등록부잔액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국채부기등록필통지서 <input type="checkbox"/> 국채등록부 등·초본
* 필요한 서류에 √ 표시하십시오.	

### 2. 해당 국채내역

국채명칭		등 록 일		증권코드	
회 차	(만기 :    일 /    년)			고객번호	
금 액	금 _____ (₩ _____ )				
입고회사 명칭	※	계좌번호	※		

주 : ※표란은 국채일괄등록확인서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인감대조	계 인	검 인

3-나	통화안정증권등록부 현재액 증명					
구 비 서 류	1. 통화안정증권등록 관련 서류 발급 청구서					
처 리 과 정	접 수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				
	경 유	-				
	처 리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				
	처리기간	즉시				
	근거법규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무취급 절차」 제14조	접수 방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 - 심사 - 결재 - 교부				
심 사 기 준	1. 증명청구인 인감의 확인 2. 증명청구액과 등록부와의 일치 여부					

**통화안정증권등록관련서류발급청구서**

(      년      월      일)

한국은행 \_\_\_\_\_ 귀중

아래와 같이 통화안정증권등록관련서류 발급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주 소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1. 청구서류

<input type="checkbox"/> 통화안정증권등록통지서 <input type="checkbox"/> 통화안정증권일괄등록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통화안정증권부기등록통지서 <input type="checkbox"/> 통화안정증권등록부현재액증명서
* 필요한 서류에 √ 표시하십시오.	

2. 해당 통화안정증권 내역

종 목 명	— —	고객번호	
금 액	금 _____ (₩ _____ )		
입고회사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번호	※

주 : ※표란은 통화안정증권일괄등록확인서 청구의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인감대조	계 인	검 인	

(규격 : A4)

나. 국제국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구 비 서 류	<p>&lt;공통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사유서</li> <li>2. 당해 거래 입증서류</li> <li>3. 거래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li> <li>4.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li>5. 서약서 (이하 허가 및 신고수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통서류)</li> </ol> <p>&lt;제출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별지 3의 공통서식 I 또는 별도 지정서식(양식 1))</li> <li>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li> <li>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li> <li>4. 기타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20일 이내				
	근거법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4호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허가					
심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지급등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li> <li>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li> <li>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li> </ol>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구 비 서 류	1. 신청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3. 신청인의 신용조회서, 납세증명서 4. 「규정」 제9-38조의 신고수리요건 부합 입증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9-39조 제4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수리				
심 사 기 준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 질서의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4. 기타 「규정」 제9-38조에 의한 신고수리요건 구비여부					

[별지 제9-12호 서식]

<b>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b>		처 리 기 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 소 재 지 )	(전화번호)
	업 종 ( 직 업 )	
신청내역	취 득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취 득 상 대 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 동 산 의 종 류	
	소 재 지	
	면 적	
	취 득 가 액	(취득단가)
	취 득 기 간	
	취 득 사 유	
<p>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p>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효기간	
신고수리 조건 :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 : 한국은행총재    인                      (외국환은행의 장)                 </div>		

210mm×297mm

-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2. 부동산감정서
  3. 기타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3	비독립채산제 적용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적 영업기금 지급 신고수리					
구 비 서 류	1. 신청서(공통서식 I) 2. 국내본사의 재무상태 관련서류 3. 영업기금 지급이 부득이 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영업계획서 5. 영업계획에 따른 송금액 적정성 입증서류 6. 영업기금 조달 자원 입증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9-19조 제3항단서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수리				
심 사 기 준	1. 국내 본사의 재무상태 및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필요성 2. 당해 해외지점에 대한 영업기금 지급의 불가피성 여부 3. 영업계획과 영업기금 송금액의 부합여부 4. 영업기금 송금액 자원의 적정성					

4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구 비 서 류	1. 신청서(별지 3의 공통서식 II) 2. 해외지점의 재무상태 관련 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9-22조 제1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수리				
심 사 기 준	1. 당해 행위나 거래가 외화취득,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나 거래가 해외지점의 활동상 필요한지의 여부					

5	상계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 3.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등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2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5-4조 제3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상계대상 채권·채무 성립 여부 3.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당해 지급 등 입증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2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5-8조 제1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수출입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래내용	거래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계약상대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금액	계약금액			신고금액			
지급등의 방법	(1)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정의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액		
			借記					
	(3)기타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3자 지급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화                                      )           </div>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210mm×297mm

- <첨부서류>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7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3. 당해 지급등 관련 입증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2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5-10조 제1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5-1호 서식]

<b>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b>						처리기간		
<b>신고인</b>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b>거래내용</b>	거래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계약 상대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금액	계약금액			신고금액				
<b>지급등의 방법</b>	(1)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정의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액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3)기 타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3자 지급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신고인</span> <span>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전화</span> <span>)</span> </div>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210mm×297mm

- <첨부서류>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8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조 서식) 2. 당해 지급등 관련 입증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2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5-11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당해 지급·수령 상대방과 거래상대방의 일치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래내용	거래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계약 상대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금액	계약금액			신고금액		
지급등의 방법	(1)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정의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액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타(    )			
	(3)기타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3자 지급 <input type="checkbox"/>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고인    ②                          (전화    )                     </div>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210mm×297mm

- <첨부서류>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9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별지 3의 공통서식 II)</li> <li>2. 관련계약서</li> <li>3. 자금통합관리계획서 등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46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자금통합관리의 필요성 여부</li> <li>3. 관련계약서</li> <li>4.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10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규정 별지 제7-1호 서식)</li> <li>2. 예금(신탁)거래 계약서</li> <li>3.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6조 제2항, 제7-11조 제3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예금·신탁 등 거래행위의 타당성 여부</li> <li>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11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또는 제7-5호 서식)</li> <li>2. 차입계약서(증권발행계약서)</li> <li>3. 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li>4.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 신고서</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14조 제4항, 제7-22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관련 계약서</li> <li>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여부</li> <li>4.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별지 제7-2호 서식]

<b>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서</b>		처 리 기 간
신 고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①인
	주 소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 ( 직 업 )	
신 고 내 역	차 주	( <input type="checkbox"/> 기관투자가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대 주	( <input type="checkbox"/> 기관투자가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통 화 및 금 액	<input type="checkbox"/> 표시통화( ①USD ②EUR ③JPY ④기타통화( ) ) <input type="checkbox"/> 금 액 <input type="checkbox"/> 외화(①미화 1천만달러 이하 ②미화 1천만달러 초과) <input type="checkbox"/> 원화(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
	차 입 / 대 출 일	
	적 용 금 리	
	대 차 기 간	
	사 용 용 도	
	상 환 방 법	
거 주 자 의 보 증 또는 담 보 유 무	<input type="checkbox"/> 보증·담보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증제공 <input type="checkbox"/> 담보제공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 타 참 고 사 항
신 고 기 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 1. 거래 사유서
  - 2. 금전대차 계약서
  - 3. 대주 및 차주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4.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해당 신고서
  -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7-5호 서식]

<b>증 권 발 행 신 고 서</b>				처 리 기 간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①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대 리 인	상 호 기 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역	증 권 종 류		액면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체결시기 및 장소		발 행 시 기 및 장 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당금지급시기 및 방법			
	원리금 상환 방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 :	①	

210mm×297mm

<첨부서류> 1. 발행계획서 또는 제7-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수 거래소간 동시상장 계획서  
 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p>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서식)</p> <p>2. 대출계약서</p> <p>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 신고서</p>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2-6조 제1항, 4항, 제5항, 제7-16조 제1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p>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p> <p>2. 관련 계약서</p> <p>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여부</p> <p>4. 원화대출시 300억원 초과 여부</p> <p>5. 기타 필요한 사항</p>					

[별지 제7-2호 서식]

<h2 style="margin: 0;">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서</h2>		처 리 기 간
신 고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 ( 직 업 )	
신 고 내 역	차 주	<input type="checkbox"/> 기관투자가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 주	<input type="checkbox"/> 기관투자가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통 화 및 금 액	<input type="checkbox"/> 표시통화( ①USD ②EUR ③JPY ④기타통화( ) ) <input type="checkbox"/> 금 액 <input type="checkbox"/> 외화(①미화 1천만달러 이하 ②미화 1천만달러 초과) <input type="checkbox"/> 원화(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
	차 입 / 대 출 일	
	적 용 금 리	
	대 차 기 간	
	사 용 용 도	
	상 환 방 법	
	거 주 자 의 보 증 또 는 담 보 유 무	<input type="checkbox"/> 보증·담보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증제공 <input type="checkbox"/> 담보제공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타 참고사항
신 고 기 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1. 거래 사유서 2. 금전대차 계약서  
 3. 대주 및 차주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4.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해당 신고서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p>1. 신고서(규정 별지 제7-3호 서식)</p> <p>2. 보증(계약)서</p> <p>3.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입증서류</p>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2-8조 제2항, 제7-19조, 제7-46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p>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p> <p>2. 관련 계약서</p> <p>3. 주채무계열소속 30대계열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보증 및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 역외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간접보증에 해당되는지 여부</p> <p>4.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확보여부</p> <p>5. 기타 필요한 사항</p>					

[별지 제7-3호 서식]

<b>보증계약 신고서</b>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종(직업)	
신고내역	보증채권자	(□거주자/□비거주자)
	보증채무자	(□거주자/□비거주자)
	보증수혜자	(□거주자/□비거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용도	<input type="checkbox"/> 주채무계열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보증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 <input type="checkbox"/>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이행에 관한 직·간접적 보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년 월 일</span>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 귀하		
	신고번호	
	신고금액	
	신고일자	
	유효기간	
	기타 참고사항	
신고기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1. 보증 사유서
  2. 보증관련 계약서
  3.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채권의 매매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p>1. 신고서(규정 별지 제7-4호 서식)</p> <p>2. 관련 계약서</p> <p>3. 매매대상물 실체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p>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7-20조 제2항, 제7-21조 제3항, 제9-43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p>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p> <p>2. 관련 계약서</p> <p>3. 기타 필요한 사항</p>					





15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li> <li>2. 투자개요서</li> <li>3. 증권취득 계약서</li> <li>4. 보유증권 교환방식에 의한 경우 교환가격의 적정성 입증서류</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31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관련 계약서</li> <li>3. 교환방식 증권취득의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li> <li>4.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16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 증권취득 계약서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32조 제3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6호 서식]

<b>증 권 취 득 신 고 서</b>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직 업)		
신 고 내 역	증 권 취 득 자		
	증 권 취 득 상대 방		
	증 권 취 득 방 법	<input type="checkbox"/>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 ( <input type="checkbox"/> 상장·등록증권간 교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환 ) <input type="checkbox"/> 현금 매수방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증 권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직접기재 (                                  )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액 면 가 액		
	수 량		
	취 득 단 가		
	취 득 가 액		
	취 득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 타 참 고 사 항	
신 고 기 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1. 증권취득 사유서
  2. 증권취득 계약서
  3.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7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규정 별지 제7-7호 서식)</li> <li>2.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약서</li> <li>3. 당해 거래의 타당성 입증서류(규정 제7-40조 제2항 각호의 경우)</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부산 및 강남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부산 및 강남본부)				
	처리기간	5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40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관련 계약서</li> <li>3. 과도한 옵션프리미엄 등 선금수수료의 지급 · 기존거래의 가격이전거래 · 타 조항 신고회피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li> <li>4.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별지 제7-7호 서식]

<b>파생상품거래 신고서</b>		처 리 기 간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①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직업)	
거래상대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직업)	
거래내용	거래 기초 자산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통화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상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거래 종류	<input type="checkbox"/> 선도거래 <input type="checkbox"/> 선물거래 <input type="checkbox"/> 스왑거래 <input type="checkbox"/> 옵션거래 <input type="checkbox"/> 신용파생상품거래( <input type="checkbox"/> 보장매입 <input type="checkbox"/> 보장매도)
	계약(명목)금액	
	만기	
	세부내용	
	거래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시 해당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해당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거래 <input type="checkbox"/>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의 변경·취소·종료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input type="checkbox"/> 자금유출입·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거래 관련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효 기 간	
	기 타 참 고 사 항	
	신 고 기 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1. 파생상품거래 사유서 2. 파생상품거래 계약서  
3.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다른 자본거래와 관련 있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등 자본거래 관련 서류  
5.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8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 3. 취득재원 확인서류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9-42조 제3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9-12호 서식]

<b>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b>		처 리 기 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 소 재 지 )	(전화번호)
	업 종 ( 직 업 )	
신청내역	취 득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취 득 상 대 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 동 산 의 종 류	
	소 재 지	
	면 적	
	취 득 가 액	(취득단가)
	취 득 기 간	
	취 득 사 유	
<p>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p>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효기간	
신고수리 조건 :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 : 한국은행총재    인                      (외국환은행의 장)                 </div>		

210mm×297mm

-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2. 부동산감정서
  3. 기타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19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8호, 제7-9호 외) 2. 관련 계약서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전 지역본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46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7-8호 서식]

담보제공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종(직업)	
신고내역	담보제공자	(□거주자/□비거주자)
	담보취득자	(□거주자/□비거주자)
	담보제공 수혜자	(□거주자/□비거주자)
	담보물종류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동산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예금(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보소재지	
	수량	
	담보가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용도	<input type="checkbox"/> 주채무계열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담보제공 <input type="checkbox"/>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이행에 관한 직·간접적 담보제공 <input type="checkbox"/> 기타(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고번호	
	신고금액	
	신고일자	
	유효기간	
	기타참고사항	
신고기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

- <첨부서류> 1. 담보제공 사유서  
2. 담보제공 계약서  
3.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4. 담보물 입증서류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7-9호 서식]

<b>임대차계약 신고서</b>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직업)	
신청내역	임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임대차물종류	
	소재지	
	수량	
	임대차물가액	(임대차료)
	임대차기간	
	임대차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p>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기관 :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210mm×297mm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차물 증빙서류
  3. 임대차사유 증빙서류
  4.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0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및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8호, 제7-9호 외) 2. 관련 계약서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7-48조 제2항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수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21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 비 서 류	<p>공통서류 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서(규정 별지 제9-2호 서식)</li> <li>2. 투자목적 및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3. 현지 설립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의 입증 서류</li> <li>4.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li> </ol>					
처 리 과 정	접 수	국제국 외환심사팀				
	경 유	-				
	처 리	국제국 외환심사팀				
	처리기간	3일 이내				
	근거법규	규정 제9-15조의 2	접 수 방 법	일반우편 또는 방문접수	수 수 료	-
	처리과정	접수-신고				
심 사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li> <li>2. 관련 계약서</li> <li>3. 기타 필요한 사항</li> </ol>					

[별지 제9-2호 서식]

역외금융회사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	처 리 기 간
-------------------------	---------

**1. 투자자 현황**

상 호 (대표자)	( )	설 립 년 월 일	
소 재 지(주 소)			
투 자 자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총 자 산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 ) 백만원
업 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2. 현지법인 현황**

(단위 : 미불)

법 인 명	( )	설 립 (예정)일	
대 표 자			
소 재 국(세부주소)	( )		
총 자 본 금		중 업 원 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투 자 형 태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한국측 총지분율: %)		
주 투 자 자 내 역	상 호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법 인 성 격	<input type="checkbox"/> 실제 영업법인 <input type="checkbox"/>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 최종 투자 업종 :	설 립 형 태	<input type="checkbox"/> 신설법인 설립 <input type="checkbox"/>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지 배 구 조	<input type="checkbox"/> 비주회사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투 자 목 적			

주1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3. 투자 방법**

**① 지분투자**

(단위 : 미불)

취득증권	증권종류	주 수	액면		취득가액	
			주당액면	합계	주당가액	합계
	투 자 비 율(%)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출 자 형 태	① 현 금	② 현 물
	③ 주 식	④ 이익잉여금
	⑤ 기타( )	
합 계	(①+②+③+④+⑤)	

출 자 자 명	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측						
현지측(②)						
제3국(③)						
합 계(①+②+③)		100.0		100.0		100.0

**② 대부투자**

(단위 : 미불)

대 부 액		자 금 용 도	
이 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원 금 상 환 방 법		이 자 정 수 방 법	
대 부 자 금 조 달 방 법	자 기 자 금	차 입 금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 수 리 ) 번 호 신 고 ( 수 리 ) 금 액 유효 기 간
신고기관 :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인)	

210mm×297mm

- <첨부서류> : 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 신 고 서 (공통서식 II)

( ) 신 고 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직 업)	
신 고 내 역		
<p style="text-align: center;">외국환거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한국은행총재 귀하</p>		



신 청 서 (공통서식 Ⅲ)  
( )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_\_\_\_\_ (인)  
주 소 또는 소 재 지 \_\_\_\_\_  
진 화 번 호 \_\_\_\_\_

아래와 같이 ( ) 변경을 신청합니다.

1. 기 인허가 사항 가. 인허가번호 _____ 나. 일자 _____ 다. 금 액 _____
2. 변경내용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3.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위의 ( ) 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 가 번 호	
허 가 일 자	

한 국 은 행 총 재

사본수신처 :

(양식 1)

<b>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b>				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업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거래은행	업종 (직업)			
		은행명 (지점명)	(전화번호)		
		지급등 계좌번호			
신청내역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지급 <input type="checkbox"/> 영수			
	거래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거래상대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거래대상 품목 등	품목명	HS 번호		
		사용목적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통화	<input type="checkbox"/> USD <input type="checkbox"/> EUR <input type="checkbox"/> JPY <input type="checkbox"/> 기타통화( )			
	지급등 금액	원금			
		이자			
기타	계약일자	만기일자			
	네고일자				
<p>「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9호, 2010.9.9)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와의 본건 지급 등을 허가 신청합니다.</p> <p>허가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은행거래시에는 거래은행의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 은행의 이란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자금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p>Issuance of this permission form does not guarantee the comple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when the Iran policy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volved or other uncontrollable outside factors would not allow the applicant's bank to process the transactions.</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한국은행총재 귀하</p>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 번호			
		허가 금액			
		유효 기간			
		년      월      일			
		<b>한국은행총재 (인)</b>			

- <첨부서류>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채권채무 증빙서류
  3. 이란교역비금지 품목 확인(신청)서, 사전판정서, 금지품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
  4. 수출입신고필증
  4. 자본거래시 채원 등에 대한 확인서
  5. 이란은행명세서
  6. 서약서
  7.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신청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첨부>의 「지급등 허가 신청내역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

## 서 약 서

신고인은 \_\_\_\_\_(또는 \_\_\_\_\_의 대리인 \_\_\_\_\_)은 20 . . 일 한국은행에 \_\_\_\_\_거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신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귀 행에 신고 이후 거래관계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와 사후관리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겠습니다.

20 . . .

신고인 \_\_\_\_\_(또는 \_\_\_\_\_의 대리인 \_\_\_\_\_)(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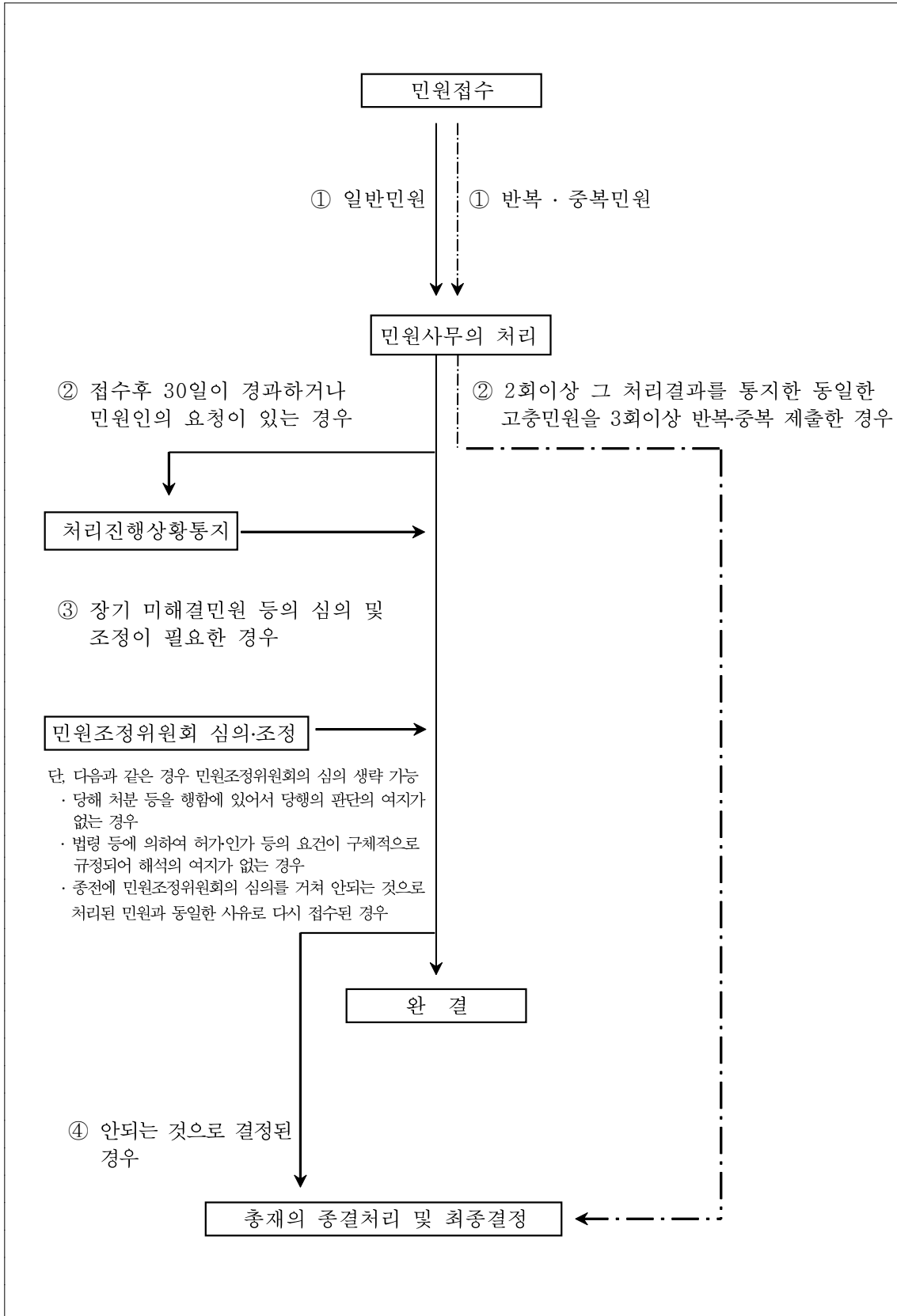
<참 고>

I. 민원사무처리 흐름도

II. 한국은행 이용안내

III. 한국은행 서비스현장

# 1. 민원사무처리 흐름도



## 2. 한국은행 이용안내

업무별	내용
모든 업무	<p>한국은행 업무시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 09:00 ~ 18:00 (영업종료 16:00)</li> <li>* 단,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토요일은 휴무</li> </ul>
민원업무	<p>한국은행의 민원업무 안내, 기타 한국은행의 각종 제도 및 시책 등 제반업무와 관련된 건의사항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li> <li>·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 3가)</li> <li>· 임시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가)</li> <li>· 전 화 : (02)759-4054, 팩스 : (02)759-4060</li> <li>· 인 터 넷 : 한국은행 홈페이지(<a href="http://www.bok.or.kr">www.bok.or.kr</a>) 보도·참여마당 内の 민원신청 이용</li> <li>*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시에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항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콜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li> </ul>
손상화폐 교환	<p>해졌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탄 돈 또는 변형된 돈을 새 돈으로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발권국 화폐수급팀 및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li> <li>· 전 화 : (02)560-1691</li> </ul>
위변조화폐 신고	<p>위조 또는 변조된 돈의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발권국 발권정책팀 및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li> <li>· 전 화 : (02)560-1611</li> </ul>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	<p>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금이체 포함), 대출의 실행 및 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금융결제국 결제업무팀</li> <li>· 전 화 : (02)759-4533(예금), (02)759-4541(대출)</li> </ul>
정보공개	<p>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공개하고 개별 청구에 의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운영팀</li> <li>· 전 화 : (02)759-5163</li> <li>· 팩 스 : (02)759-5170</li> <li>· 인 터 넷 : 한국은행 홈페이지(<a href="http://www.bok.or.kr">www.bok.or.kr</a>) 보도·참여마당 内の 정보공개 이용</li> </ul>

업무별	내용
경제통계 안내	<p>통화금융, 국민계정, 국제수지, 물가, 재정 등 주요 경제통계에 관하여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안내센터</li> <li>· 전 화 : (02)759-4400</li> <li>· 인 터 넷 :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li> </ul>
한국은행 유료자료 구입	<p>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각종 유료자료 구입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기관 : 서원기업(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 코너)</li> <li>· 전 화 : (02)759-4805</li> <li>· 인 터 넷 : 서원기업 쇼핑몰(www.seowonbok.co.kr)</li> </ul>
화폐박물관 관람	<p>전시품 및 미술품 안내, 단체관람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션국 박물관운영반</li> <li>· 전 화 : (02)759-4881~2</li> <li>· 관람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7:00(종료 1시간 전에 입장)</li> <li>· 휴 관 일 : 월요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2일. 다만, 공휴일(설날, 추석 제외)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개관</li> <li>· 인 터 넷 : 화폐박물관(museum.bok.or.kr)</li> </ul>
한국은행 자료이용	<p>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각종 자료의 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li> <li>· 이용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7:00</li> <li>· 장 소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내 자료안내실</li> <li>· 전 화 : (02)759-4659</li> </ul>
방문연수 및 강사지원 신청	<p>한국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경제관련 강의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 또는 경제관련 강의나 세미나에 한국은행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자 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li> <li>· 전 화 : (02)759-5369, 팩 스 : (02)759-5187</li> </ul>
한은금요강좌 참가	<p>한국은행에서 매주 개최하는 한은금요강좌에 대한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최 일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li> <li>· 주 제 : 시의성 있는 금융·경제관련 내용</li> <li>· 수강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개최일 전일까지 신청 요망)</li> <li>· 장 소 :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참조</li> <li>· 신청방법 : 한국은행 경제교육(<a href="http://www.bokeducation.or.kr">www.bokeducation.or.kr</a>) “한은금요강좌”를 통해 신청</li> <li>· 담당부서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li> <li>· 전 화 : (02)759-4669, 팩 스 : (02)759-4189</li> <li>· * 강의자료는 홈페이지 “한은금요강좌 강의자료” 항목에 수록되어 있음</li> </ul>

### 3. 한국은행 서비스헌장

#### 서비스헌장

우리는 국민경제가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봉사임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1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3 통계정보와 경제분석자료를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4 국민들을 고객으로 직접 맞이하는 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써 응대함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 ◆ 물가안정 노력 강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각 경제주체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공표하겠습니다.
- 물가안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주요 정책집행내용을 수시로 공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 국회에 연 2회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보고하여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신용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겠습니다.
- 주요 통화신용정책방향을 공표하고 수시로 언론과 일반인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업계, 금융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각층과의 정책간담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모든 국민이 우리 경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관련 주요 변경내용은 물론 제도 및 용어에 대한 해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리, 외환, 통화 등 금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경제관련 강의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청할 경우 외부기관에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은금요강좌」의 참가는 개최주 월요일 09:30~부터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강사지원 요청은 강사지원 요청일 2주전까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자료의 열람, 복사,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안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안내실 이용방법>

- 이용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 ~ 17:00(단,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 마감)
- 휴관일 :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2일  
다만, 공휴일(설날 및 추석연휴 제외)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개관
- 문의처 : 화폐박물관 자료안내실(☎02-759-4230)

-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경제통계(통화·금융, 국민계정, 국제수지, 물가 등)는 미리 알려진 일정에 따라 공표하고 아울러 제반 통계관련 문의에 대한 응답을 위해 경제통계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계안내센터(☎02-759-4400)는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직원과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편의성 제고

고객이 자주 왕래하는 창구부서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상근 배치하는 등 ‘고객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인허가관련 서류작성 안내, 자문은 물론 필요한 경우 서류작성도 대행하는 등 창구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당행을 찾으시는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영업장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 당행 출입고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불편한 점이나 미흡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전화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 친절한 대고객 응대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 등 상담창구>

- 한국은행 허가, 신고수리,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하여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상담방법 : 방문(국제국 외환심사팀, 삼성본관 2층)
- 전화
  - o 외국환거래 허가, 신고수리, 신고 : (02)759-5300
- 인터넷 :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참여마당 内の 외환거래심사업무 이용
- 민원인 대기실 운영
  - o 신고인, 방문 상담자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TV, 잡지, 인터넷 전용 PC, 복사기 등을 비치하고 있음
- 민원처리 및 상담시간 : 09:00 ~ 16:00

당행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줄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관련업무를 최대한 전산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이 당행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외국환거래 신고 등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전결권의 하부위임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유사한 대외징구보고서는 통폐합하고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전산화하여 보고서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제도 운영

◆ 민원안내실 운영

한국은행 업무관련 불편사항 또는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은 당행 민원안내실에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은 전화, FAX,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http://www.bok.or.kr))를 이용하여 신분을 밝히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질의 등은 신청 즉시 처리해 드리며 제도 또는 정책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최장 14일 이내에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02-759-4054)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제도 운영

한국은행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행이 생산한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공한 정보가 고객의 기대에 미흡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이 한국은행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관련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당행 홈페이지([www.bok.or.kr](http://www.bok.or.kr))를 이용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커뮤니케이션 운영팀(☎02-759-5165, 5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의 의한 평가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은행 업무에 대한 고객의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기 위해 “고객에 의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창구 및 출입문에 비치된 카드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이용시 불편 및 애로사항을 지적하시거나 각종 업무개선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지적한 각종 불편 및 애로사항과 제안사항은 당행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고객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내용의 이행상황은 제안하신 고객 개인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본부 · 지역본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점포명	주소	전화번호
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02)759-4114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25	(051)240-37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45	(053)429-0301
목포본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9	(061)241-1000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26	(062)601-1000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25	(063)250-4000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5	(042)601-1114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043)220-0550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1	(033)258-3200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10	(032)880-0114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0	(064)720-2411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031)250-0114
경남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	(055)260-5114
강릉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63	(033)640-0100
울산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5	(052)259-7400
포항본부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054)289-2800
강남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02)560-1114